

10110 공통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

이 시방서는 대한주택공사(이하 이 시방서에서 "주공"이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축공사, 토목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조경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1.1.2 적용 제외

이 시방서의 기재사항 중 당해 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1.3 적용순서

가. 설계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에 의하여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설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아래 순위에 따라 적용하되 감독자가 이를 해석·조정하여야 한다.

1)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2) 설계도면

3) 공사시방서

4)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다만,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②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는 제외)

나.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4 공사별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건축공사, 토목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조경공사의 공사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다만 해당 시방에 "○○은 '(다른 절)'에 따른다"라고 명시된 경우에는 그 "(다른) 절"의 내용을 당연히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의 ()안에 명시한 것은 그와 같이 인용한 공종이다.

1) 건축공사 : 1총칙, 2철근콘크리트, 3건축, (4토목, 5기계설비, 6전기)

2) 토목공사 : 1총칙, 2철근콘크리트, 4토목, (3건축, 5기계설비, 8조경)

3) 기계설비공사 : 1총칙, 5기계설비, (3건축, 4토목)

4) 전기공사 : 1총칙, 6전기, (2철근콘크리트)

5) 정보통신공사 : 1총칙, 7정보통신, (2철근콘크리트, 5기계설비, 6전기)

6) 조경공사 : 1총칙, 8조경, (4토목, 6전기)

나. 이 시방서에서 공종별 공사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구분이 필요한 경우는 주택건설 전문시방서 관리자의 해석에 따른다.

1.1.5 법규 우선준수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은 관련법규 (지침 및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준공 전에 관련법규가 변경되어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1.6 감독자 경유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주공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에는 주공 소속의 건설공사 감독자의 확인일자, 성명 및 날인(감독자 경유 표식)이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로써 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공사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공사(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공사는 제외)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1.2.2 계약문서

이 시방서에서 "계약문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문서"로써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정한 공사에 있어서의 산출 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3 감독자

- 가. 이 시방서에서 "감독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 나. 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 다. 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확인, 검사 및 협의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2.4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수급인이 지정한 해당 공사의 업무에 대한 대리인을 포함한다.

1.2.5 현장대리인

가.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나. 현장대리인의 배치기준은 "불임 1.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른다.

1.2.6 현장요원

가.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기술이 인정되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관리를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나. 현장요원의 배치기준은 "불임 1. 건설기술자 배치기준"과 이 시방서의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및 조경(이하 이 시방서에서 "공사별"이라 한다)의 일반 사항에 따른다.

1.2.7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상품이나 수급인의 책임으로 발생된 결함 또는 계약도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하며,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또는 접지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한다.

1.2.8 주공

이 시방서에서 "주공"이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인 "대한주택공사"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5항"의 "발주청"을 말한다.

1.2.9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주공이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10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주공이 수급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 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1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 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수급인이 실시한 확인결과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확인 또는 시험할 수 있다.

1.2.12 검사원

이 시방서에서 "검사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 주공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1.2.13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주공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4 시공상세도(Shop Drawings)

이 시방서에서 “시공상세도”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에 따라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기술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공시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

1.2.15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 가.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 나.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 다. 기타 건설관련법규
- 라.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 마. 국어사전

1.3 수급인의 책무

1.3.1 입찰서 작성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하기 전에 지표조건, 수문기상학적조건, 필요자재, 작업범위와 성격, 필요 편의시설, 현장과 주위상황, 접근방법 등 입찰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찰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입찰하기 전에 반드시 설계서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이 반영된 입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중이나 완료한 후에 이 절 “1.6.1 설계변경 사유”에 따르지 않고서는 주공에 추가비용의 지불을 청구할 수 없다.

1.3.2 설계서 검토

- 가.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공사 착수전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설계서대로의 시공 가능 여부,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의 기초 및 흙막이 공법,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주공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나.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주공에 보고하고, 주공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주공의 해석 및 지시는 수급인으로부터 검토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검토,

설계서 재작성, 내역산출 등 중요한 사안인 경우에 한하여 통보일을 조정할 수 있다

- 1) "1.6.1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동 사유외에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 2) "10125 공사협의 및 조정 1.3.1 다."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3) 설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 4)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5) 수급인이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 6) 설계서대로 시공할 경우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다. 수급인이 주공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주공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 라. 수급인이 "가"항의 설계서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지 못하여 발생된 하자의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1.3.3 지장을 조사

가. 지상 지장을 조사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공사에 지장을 주는 노변설비(신호등, 카메라, 탑, 방향표시판 등), 전력선 및 전화선, 전주 등을 조사하여 지장물의 상황 및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등을 작성하고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지하 매설물의 조사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상 · 하수도, 전신케이블(cable), 도시가스(gas), 공동구 등의 지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등을 작성하고 관련 인 · 허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출파기, 말뚝박기, 굴착 등의 작업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3.4 공사수행

- 가.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주공 및 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주공 또는 감독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주공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 나.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주공의 승인을 득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이의 설계변경은 "1.6설계변경"에 따른다.
- 다.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주공이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 라.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 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 정돈, 점검, 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 · 외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마.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1.5 환경조건"으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

야 한다.

- 바.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주민,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동 중에 찔림, 긁힘, 놀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 사. 수급인은 하수급인 및 시공참여자와 함께 당해 현장에 투입된 공사 차량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에서 정한 운행제한 기준(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등)을 초과한 운행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당해 차량이 과적에 적발되어 고발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아. 수급인은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차량의 과적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3.5 책임한계

- 가.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및 고용한 자와 수급인과 납품계약이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건설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나. 공사목적물을 주공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 다. 수급인이 주공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협의, 문제점이나 이의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3.6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 · 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 담자, 품질관리자, 시공상세도면 작성자 등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항 목과 같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가. 현장대리인 등이 법에 의한 교육이나 유급휴가 등으로 주공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나. 당해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공측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될 경우, 그 기간 동안의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여부 및 그 인원수에 대하여 주공의 승인을 득한 경우

1.3.7 시공감리CITIS의 사용

수급인은 공사수행시 주공의 시공감리 CITIS에 구축된 사항은 동 시스템을 사용 하여야 한다.

- 가. 수급인은 현장배치 즉시 CITIS에 사용자 등록을 하고 감독자에게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 나. 수급인은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공, 품질, 공정, 자재, 검사, 하도급, 안전, 환경, 계약변경 등 시스템에 구축 되어 있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다. 수급인은 동 시스템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업무를 처리 하여야 한다.

1.4 공사기한 연기

1.4.1 연기 요청일수

- 가.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주공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10130 제출물 1.2 공사 예정공정표" 상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입주일정계획을 감안하여 주공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에 의거 공사 중 기후여건이 계약기간에 반영된 일반적인 기후여건보다 악화되어 공사가 지연되었을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 제 9조"에 의거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일수는 주공 산출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간접노무비의 증액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1.4.2 제 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0131 공무행정서류 1.6.2 공사기한 연기원"에 따른다.

1.5 환경조건

1.5.1 환경조건 준수

가. 공사목적물의 품질 저하나 공사시행 중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이 시방서의 각 절에 환경조건별 시공법이 특별히 정하여진 공사는, 그 정해진 환경조건에 저촉되는 기간 중에는 공사를 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위 "가"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시방서의 각 절이 정하는 환경조건별 시공방법에 적합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5.2 공사 시행방안 제출과 승인

수급인이 위 "1.5.1 나"항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시공품질 저하, 안전사고 및 공해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공사시행방안을 수립, 주공에 제출("10130 제출물 1.3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일체의 비용을 주공에 청구할 수 없다.

1.5.3 책 임

수급인은 위 "1.5.2"의 공사시행방안에 대한 주공의 승인여부에 관계없이 이 공사 시행방안이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잘못, 재시공, 보수, 안전사고 및 도난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1.6 설계변경

1.6.1 설계변경 사유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주공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시행 할 수 있다.

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주공에 통지한 다음 각호의 사유
1)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지질·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 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공이 수급인에게 통보한 다음 각호 사유
- 1)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 2) 특정공종의 삭제
 - 3) 공정계획의 변경
 - 4) 시공방법의 변경
 -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 다. "1.1.5 법규 우선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1.3.3 공사수행 바."에 따라 입주자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항
- 마. "10125 공사협의 및 조정 1.1.2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주공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 바.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정합되지 않는 사항 및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1.6.2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 가. 수급인은 새로운 기술·공법(주공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4"에 따라 주공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시행 할 수 있다.
- 나.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승인 요청서류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4"에 따라 주공에 제출하되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당초 공법과 신기술·공법의 비교
 - 2) 신기술·공법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 3) 당초 공법과 신기술·공법의 세부 공사비 비교 내역
 - 4) 신기술·공법 적용에 따른 유지관리 및 운용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 예측
 - 5) 기타 신기술·공법 적용을 판단하기 위한 필요자료 등
- 다. 신기술을 적용하여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10131 공무행정서류 불임 표25"의 서식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여 준공서류 제출시 첨부하여야 한다.

1.6.3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0131 공무행정서류 1.6.1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른다.

1.6.4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른다.

1.7 기성량의 조정

- 가. 주공이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공확인이 완료된 부분에 한하여 기성으로 인정한다.

1.8 하도급

1.8.1 하수급인 선정

수급인이 공사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8.2 하수급인에의 주지

수급인은 주공 또는 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킨다.

1.8.3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가.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주공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공사 착수예정일 30일전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있어야 한다.

- 1) 하도급 예정업종
- 2) 하도급 계획금액
- 3) 하도급계약 예정일

다. 하도급에 관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0131 공무행정서류 1.9 하도급 관련서류"에 따른다.

1.8.4 안내판 설치

수급인은 수급인 및 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9 신 자재 · 공법의 시험시공

1.9.1 시공기록

수급인은 주공이 신 자재 · 공법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지시하는 시험시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시험시공에 관한 공사진행과정, 소요인력품 및 성과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1.9.2 협조

수급인은 시험시공과 관련하여 주공 및 감독자가 시행하는 현장교육 및 기술지도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1.9.3 시험시공 비용 정산

주공이 신 자재 · 공법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지시하는 시험시공 비용은 설계변경 처리 한다.

1.10 지중발굴물 등

수급인은 당해 건설공사장 안의 지상 및 지하에 있는 물건, 시설물, 구조물, 문화재 등을 주공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철거, 발굴, 운반, 처분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11 응급조치

- 가.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나. 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 주공은 일방적으로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 다. 가항 및 나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4항에 따른다.
- 라. 하자보수 기간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주공 및 관리업체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 수급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주공 및 관리업체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12 공사계약외 분쟁

- 가. 당해 계약내용외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간에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 나. “가”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 다. “가항” 및 “나”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13 관련규준 등의 비치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규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 가.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 나.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 다.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지침 및 조례
- 라. 관련 한국산업규격(KS)
- 마. 건설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 바.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 사. 기타 “제1편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14 복수적용자재(공법)

- 가. 동일 또는 유사한 성능 · 기능이 검증된 복수의 자재(공법)로 현장에서 수급자가 자유

롭게 선택 적용할 수 있는 자재
나. 각 공종별 자재(공법) 적용은 공종별 시방에 준한다.

2. 자 재

(없음)

3. 시 공

(없음)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1. 적용범위

1.1 적격심사 대상공사

적격심사 대상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적격심사 관련사항 이행)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2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이행)에 의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2 최저가낙찰제 및 일괄입찰 대상공사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및 일괄입찰공사 등 적격심사 미실시 대상공사는 “2.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단, 터널, 도로, 하수종말처리장 등 특수시설물로써 이 시방서와 별도로 입찰 관련서류에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을 정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2.1 건설기술자 배치계획 제출

수급인은 착공신고서 제출시 건설기술자의 경력증명서(관련협회 발급) 및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배치인력, 배치기간 등 현장기술자 배치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2.2 건설기술자 자격요건

구 분	자격 요건	비 고
현장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 동종공사 및 유사공사 참여경력 5년 이상인 자○ 경력 인정범위 : 각각의 경력을 합산함<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 동종공사 및 유사공사 현장대리인 경력- 시공, 유지관리 및 공무 경력 : 당해 동종공사 및 유사공사 전체 참여경력의 25% 인정	
공종별 공사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 동종공사 및 유사공사의 시공 및 유지관리 경력 5년 이상인 자	건축, 기계, 토목
공무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 동종공사 및 유사공사의 현장 공무경력과 본사의 공무, 사업관리 및 공사견적 경력을 포함하여 5년 이상인 자	
품질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기술관리법령상의 품질관리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	
안전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써 안전관련 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건축기사 (아파트 건설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기사 수 : 건축기사 1인당 담당공사 물량 120호 미만○ 당해 동종공사 및 유사공사에 3년이상 참여한 경력자 수 : 건축기사 수의 70% 이상	※ 현장대리인, 공종별 공사책 임자, 공무책임자,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제외
토목기사 (대지조성 및 도시 기반시설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목기사 수 : 토목기사 1인당 담당공사 물량[별표1 기준]○ 당해 동종공사 및 유사공사에 3년이상 참여한 경력자 수 : 토목기사 수의 70% 이상	

[별표 1] 사업규모별 토목기사 1인당 담당공사 물량 배치기준

공사 구분	사업규모	배치기준	비고
대지조성 및 도시기반 시설공사	165,000㎥ 미만	토목기사 2인이상	
	165,000㎥ 이상 330,000㎥ 미만	토목기사 3인이상	
	330,000㎥ 이상 660,000㎥ 미만	토목기사 4인이상	
	660,000㎥ 미만 825,000㎥ 미만	토목기사 5인이상	
	825,000㎥ 이상	토목기사 5인 + 1인/165,000㎥ 당	

2.2.1 자격요건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 5]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자로서 현장대리인 경력은 당해 동종 및 유사공사의 현장대리인, 시공관리책임자 및 공공기관 상주감독 경력을 적용함.
- 나. “당해동종공사”란 아래기준에 의하여 동 경력은 100% 인정함.
- 1) 건축 및 기계공사 : 공동주택 건설공사 참여경력
 - 2) 건축, 기계, 토목공사로 발주한 공사중 토목공사 :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토목 공사 참여경력
 - 3) 대지조성 및 도시기반시설공사 : 대지조성, 단지조성, 택지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업단지조성, 농공단지조성사업 참여경력
- 다. “유사공사”란 아래기준에 의하여 동 경력은 50% 인정함.
- 1) 건축 및 기계공사 : 콘도미니엄, 오피스텔, 기숙사, 연수원, 여관, 호텔 등 공동주택과 유사한 건설공사 참여경력
 - 2) 건축, 기계, 토목공사로 발주한 공사중 토목공사 : 나 2)항의 참여경력을 제외한 토목공사 참여경력
 - 3) 대지조성 및 도시기반시설공사 : 나 3)항의 참여경력을 제외한 토목공사참여경력
- 라. 자격요건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의 공사종류 및 공법, 기술분야 및 전문분야, 담당업무란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되 1개 사업명에 1개의 주된 분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해 적용. (2개분야 이상 등록된 경우는 주된 분야 표기)
- 마. 건설기술자의 소속 및 경력산정 기준일은 건설기술자 배치계획 서류 제출일로 산정
- 바. 주공의 부조리관련 제재기준에 의거 제재기간중에 있는 관련 기술자는 배치할 수 없으며, 제재 기준일은 배치계획 서류 제출일로 산정

2.2.2 건설기술자의 추가배치 등

- 가. 수급인은 아래기준에 해당되어 주공으로부터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기사 등 품질 확보에 필요한 건설기술자를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 1) 건설공사 수행과정에서 시공품질이 극히 저조하거나 공정지연이 과다하여 주공에서 정한 특별관리지구로 지정된 후 품질 및 공정만회 등 정상화가 지연됨으로써 건설기술자의 추가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공사규모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건설공사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 나.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및 공사추진 여건상 반드시 상주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대리인이 아닌 현장요원은 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일정기간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수 있다
 - 다. 수급인은 시공중 불가피한 사유로 건설기술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 내용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범위내에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